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131 호    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15년 월 일<br>(제 338 회) |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 |
| 제출연월일 | 2015년 2월 23일 |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13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15년 2월 23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민간위탁의 투명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사무 신설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
- 위탁사무 삭제 및 이관,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 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<제명개정>

-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→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### <조문개정>

- 민간위탁의 목적 및 정의 관련 조문 개정(안 제1조, 제2조)
  -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위탁 내용 삭제
-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(안 제4조제3항)
  - 민간위탁의 남용방지 및 투명성·책임성 제고
- 근거법령 개정 : 수탁사무에 대한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규정(안 제8조)
  - 사무관리규정 제13조 →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

### <위탁사무 삭제> 안 [별표]

-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(창조전략담당관) : 대행사업으로 시행
-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(기업유치지원과) : 대행사업으로 시행
-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(미래산업과) : 사업종료
- 맞춤형 인턴제 운영사무(일자리창출과) : 개별조례에 근거

### <그 밖의 개정사항> 안 [별표]

- 사무 이관
  - 인터넷방송 운영 : 정보화담당관 → 공보관

## 3. 의안전문 : 불 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## 5. 관계법령 발체 : 불 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,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3. “위탁사무”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.
4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 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국가사무의 위탁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의 1에 해당 되는 사무에 대하여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선정한다”를 “선정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④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6조제5항 중 “예산의 범위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하고 “충청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하여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심의대상기관(법인·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)과 친족관계인 경우
2.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3.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
4.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

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수탁기관에서”를 “수탁기관의”로 한다.

제10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기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

2.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

3. 관계법령,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

4.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5. 수탁기관이 파산,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

6. 그 밖에 공익상 관리·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”를 “처리에 대하여”로 하고,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
②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사무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| 분야별   | 일련번호 | 사무명  | 근거법령  |
|-------|------|--|---|
| 투자유치과 | 1    | •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<br>(다만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.) |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|

③ 「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 중 “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
④ 「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
⑤ 「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
- ⑥ 「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4조제4항 중 “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”로 한다.
- ⑦ 「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9조제2항 중 “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- ⑧ 「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9조제2항 중 “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- ⑨ 「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8조제3항 중 “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- ⑩ 「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·벤처연구센터 관리·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제4항 중 “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- ⑪ 「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1조제2항 중 “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- ⑫ 「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8조제2항 중 “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”로 한다.
- ⑬ 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0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”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”로 한다.
-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]

**위탁사무명** (제4조제4항 관련)

| 소 관    | 위탁사무명   | 위탁<br>대상기관              | 근거법규  |
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공보관    | · 인터넷방송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        | 지방자치법 제104조   |
| 투자유치과  | ·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<br>(다만, 오창과학산업단지는<br>임대사무를 포함한다) |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<br>입주기업체협의회 | 산업집적활성화 및<br>공장설립에 관한 법률<br>제30조, 제31조<br>같은법 시행령 제5조 |
| 일자리기업과 | · 기능경기대회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산업인력공단<br>충북지사        |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,<br>제22조, 제24조, 제25조                     |
| 전략산업과  | · 충청북도 공예품경진대회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내 공예단체·법인              |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<br>같은법 시행령 제54조                    |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<u>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(시·도지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,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| <p><u>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,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민간위탁”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“수탁기관”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</p> <p>3. “위탁사무”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.</p> <p>4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① 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②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국가사무의 위탁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|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<p>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(생략)<br/>1. ~ 3. (생략)<br/>4. <u>기타</u>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</p> <p>② 도지사는 <u>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</u>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③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도지사가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</p> | <p>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<br/>1. ~ 3. (현행과 같음)<br/>4. <u>그 밖에</u>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</p> <p>② 도지사는 <u>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</u>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.</p> <p>③ 도지사는 <u>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</u></p> <p>④ <u>제1항에 따라</u> 도지사가 민간위탁 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</p> |
| <p>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<u>선정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<u>제6조의 규정에 의한</u>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    | <p>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<u>선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</u>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<u>제6조에 따라</u>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  |
| <p>제6조(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도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 | <p>제6조(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④ <u>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 |

| 현행   | 개정안  |
|--|--|
| <p>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<u>예산의 범위 안에서 "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"</u>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7조 (생략)</p> <p>제8조(수탁사무의 처리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<u>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도지사는 <u>수탁기관에서</u> 사무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 (생략)</p> | <p>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<u>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</u>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이 심의대상기관(법인·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)과 친족관계인 경우</li> <li>2.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</li> <li>3.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</li> <li>4.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/ol> <p>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</p> <p>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수탁사무의 처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<u>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8조에 따라</u>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도지사는 <u>수탁기관의</u> 사무처리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행   | 개정안   |
|--|---|
| <p>제10조(지휘·감독등)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,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</u></p> <p>② 도지사는 <u>수탁기관에 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도지사는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11조(사무편람) ① (생략)</p> <p>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<u>얻어야</u> 한다.</p> | <p>제10조(지휘·감독 등)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도지사는 <u>수탁기관에</u>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, 사용자,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기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</li> <li>2.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</li> <li>3. 관계법령,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</li> <li>4.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5. 수탁기관이 파산,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</li> <li>6. 그 밖에 공익상 관리·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</li> </ol> <p>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<u>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u></p> <p>제11조(사무편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<u>받아야</u> 한다.</p> |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<p>제12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,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이의신청) ① 위탁사무의 <u>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</u>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,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 (생략)</p> <p>제15조 (생략)</p> | <p>제12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</u>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,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이의신청) ① 위탁사무의 <u>처리에 대하여</u>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</u>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제1항에 따라</u>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,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 (현행과 같음)</p> |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####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### 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8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)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,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